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중개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서 발생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 129 조제 5 항제 2 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보다 작은 경우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89 조의 2③ 2025.7.1 시행에 따른 변경

		1 - 「소득세법」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제 1 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제 1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 분의 14 로 하여 계산한다.	
제 20 조(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정위 시정조치 사항